

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2호(2010.06.10.)로 정비구역 지정, 성북구고시 제2016-191호(2016.12.29.), 성북구고시 제2017-184호(2017.12.21.), 성북구고시 제2018-58호(2018.05.17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, 성북구고시 제2018-87호(2018.07.1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성북구고시 제2023-77(2023.5.25.)호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처리하고,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19일

성 북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(10,674.6㎡)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: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이상재),
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, 2층
5.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인가일 : 2026년 3월 16일
6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사항
 - 분양기준가액의 산정기준 변경(총 사업비 등)
 - 건축시설의 분양 예정 대지 변경(아파트 평형 면적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)
 - 일반분양세대 평형별 유형별 금액 변경

7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(☎ 02-2241-2793) 및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(☎ 02-921-6483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끝.